

수원지방법원 2021. 9. 2 선고 2020나93116 판결 [주식매매대금반환청구]

재판경과

수원지방법원 2021. 9. 2 선고 2020나93116 판결

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. 10. 23 선고 2020가단50261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A

피고, 항소인 C

변론종결 2021. 6. 24.

판결선고 2021. 9. 2.

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. 10. 23. 선고 2020가단50261 판결

주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,5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2. 12.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.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,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.

2. 고치는 부분

가. 제1심판결 이유 중 “피고 주식회사 B”를 “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”로, “피고 회사”를 “제1심 공동피고 회사”로, “피고들”은 “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회사”로 각각 고친다.

나. 제1심판결 이유 제5면 제16행의 “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”을 “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”으로 고친다.

다. 제1심판결 이유 제5면 제17행부터 제18행의 “피고 회사 발행 주식을 매수하였는데, 그 주식은 피고 C 소유의 주식인 사실”을 “제1심 공동피고 회사 발행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반환하였는데, 그 반환의 상대방이 피고였던 사실, F이 피고가 한 허위 설명과 홍보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에게 주식 매수를 권유하였던 사실, 원고는 F에게 그 주식을 반환하겠다고 하면서 매수대금

110,500,000원의 지급을 요청하였는데, F은 그 매수대금의 액수가 잘못되었다거나 과다하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피고 명의 계좌에 그 주식을 입고해달라고 요청한 사실”로 고친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이준규, 판사 이승일, 판사 문유진